

문서번호	○○실-4029		사원	▽▽1부장	▲▲실장	▼▼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8.09.11.		협 조				
공개여부	비공개(5)						

## 2018년 상반기 회계결산에 따른 재무감사 결과보고

2018. 9. 11

# ||| 목 차 |||

<b>I. ▲▲실시 개요</b>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및 범위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중점사항	1
<b>II. 감사대상 업무 현황</b>	2
1. 상반기 사업실적	2
2. 상반기 사업실적 비교	2
<b>III. 감사결과</b>	3
1. 총 평	3
2. 지적사항 총괄	3
3. 지적사항 요약	3
<b>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b>	4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4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4
2.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4
<b>V. 기타사항</b>	5

# I. ▲▲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2018년 상반기 결산서, 재무제표, 기타 부속서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재무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우리공사 재무정보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 및 범위

본사 및 ○○○○○○원, ◇◇◇◇◇◇원, 12개 본부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상반기 결산서, 재무제표, 기타 부속서류 등 각 기관 회계업무 처리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8년 8월 7일 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 2일간 ▲▲실 3인,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신□□등 4인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의 적정성 유무,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점검, 주요 계정과목 회계정책의 이해 및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 1. 상반기 사업실적

(단위 : 백만 원)

I.	사업수입	(+)	253,875
II.	사업비용	(-)	232,303
III.	사업손익(I - II)		21,572
IV.	기타수익	(+)	1,595
V.	기타비용	(-)	5,829
VI.	기타손익	(-)	2
VII.	금융수익	(+)	2,197
VIII.	금융원가	(-)	-
IX.	법인세차감전성과 (III+IV-V+VI+VII-VIII)	(+)	19,533
X.	법인세비용	(-)	4,729
XI.	당기순이익(IX-X)		14,803

### 2. 상반기 사업실적 비교

#### [2018년도 상반기 사업실적표]

(■■■■■■■공사)

(단위 : 백만 원)

과 목	당 기		전 기		증 감 금 액	비 고
	금 액		금 액			
I 사업수입		<b>253,875</b>		<b>256,179</b>	-2,304	
1. 측량수수료수입	253,875		256,179			
II 사업비용		<b>232,303</b>		<b>208,560</b>	23,743	
1. 업무비	198,505		177,268			
2. 관리비	33,798		31,292			
III 사업손익		<b>21,572</b>		<b>47,619</b>	-26,047	
IV 기타수익		<b>1,595</b>		<b>1,931</b>	-336	
V 기타비용		<b>5,829</b>		<b>5,454</b>	375	
1. 기술원양성비	2,571		2,419			
2. 연구사업비	2,726		2,662			
3. 기부금	258		130			
4. 잡손실	43		91			
5. 투자부동산상각비	175		153			
6. 기타의대손상각비	55		0			
VI 기타손익		<b>-2</b>		<b>269</b>	-271	
VII 금융수익		<b>2,197</b>		<b>1,766</b>	431	
VIII 금융원가				<b>72</b>	-72	
IX 법인세차감전성과		<b>19,533</b>		<b>46,058</b>	-26,525	
X 법인세비용		<b>4,729</b>		<b>9,947</b>	-5,218	
XI 당기순이익		<b>14,803</b>		<b>36,111</b>	-21,308	

### Ⅲ. 감사결과

#### 1. 총 평

2018년 6월 30일 기준의 상반기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상반기 손익계산서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공사의 재무규정·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다만, [표 1]의 외부감사인 의견 중 2018 회계연도 본 결산 시 참고하여야 할 사안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요구 하고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별도의 문서로 통지하고자 합니다.

[표-1] 상반기 결산감사 외부감사인 의견

제목	주요 내용	후속조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회계적 영향평가 실시	제1115호와 제1109호의 제·개정에 따른 회계적 영향에 대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2018 결산에 반영	감사결과 처분요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적용에 대한 영향 분석	개정된 제1116호(리스)를 2019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 파악 필요	별도 문서 통보 (△△처)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천원, 명]

구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현지 처분	제도 개선	모범 사례
		통보	사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장계	문책	고발			
건수	1				1								
금액	-												

#### 3. 지적사항 요약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회계적 영향평가 실시{권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와 제1109호의 제·개정이 공사에 미치는 회계적 영향분석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해야 함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원)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행정상 조치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1	△△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회계적 영향평가 실시	권고			1개월	▲▲실 회계법인

□ 행정상 조치 : 1건 <권고>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 목	처 분 내 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2.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일련 번호	제 목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조치 사항	금액	인원	감사자
“해당사항 없음”						

## V. 기타사항

### 1. 향후 처리계획

– 관련부서에 처분요구 및 외부회계감사인 의견 관련부서에 통보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회계법인 상반기 회계 및 재무감사 결과 보고 1부. 끝.

일련번호	1 - 1	감사자	▲▲실 3인 ◎◎회계법인 4인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사 ◇◇처	처분요구일자	2017. 9.	회신기일	1개월

## □□□□□□공사 상임감사

### 권 고

제 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에 따른 회계적 영향평가 실시

관 계 기 관 □□□□□□공사 본사 ◇◇처

내 용

□□□□□□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2017회계연도까지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제1018호(수익)과 제1011호(건설계약)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의 수익인식모형



◎◎◎◎기준원은 기존의 제1018호(수익)과 제1011호(건설계약)이 거래 유형별로 상이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상품을 4개 범주<sup>1)</sup>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현금 흐름 특성과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3개 범주<sup>2)</sup>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회계 처리 하도록 개정된 제1109호(금융상품)을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 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는 제·개정된 기준서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기준서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회계적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개정된 기준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이론적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제3자가 영향분석을 실시해야만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회계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재무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공사의 외부회계감사인은 제·개정된 기준서가 공사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부회계감사인이 아닌 제3의 외부 회계 전문가로부터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제1109호(금융상품)이 공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공사장(◇◇처장)은 제·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제1115호 및 제1109호의 적용이 공사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회계적 영향에 대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 당기손익, 매도가능, 만기보유, 대여금 및 수취채권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상각 후 원가측정